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'21.1.12. 공포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'21.00.00. 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징계 감경 사유에 시·도의회 의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추가(안 제5조)
- 나. 지방의회 의장도 규칙으로 징계처리 필요사항 규정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”을 “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교육감 및 시·도의회 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징계의 감경) ① (생략)	제5조(징계의 감경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정부표창규정」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(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을 받은 공적. 다만,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(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)·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</u>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. ~ 사. (생략)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· 교육감 및 시 · 도의회의 의장</u> ---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임 규정)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이 규칙으로 정한다.	제9조(위임 규정)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.